

을 살펴야 할 것이다. 주로 교정치료계약을 주로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치아를 움직이는 것에 의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의학적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치과의사가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정치료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치근손상, 턱관절통증, 충치유발, 교정부위의 회귀현상 등이 나타난다. 미국에서도 교정치료를 위한 발치, 전치(前齒)의 후방이동, Head gear 사용 등 전통적인 교정치료가 원인이 되어 턱기능부전증으로 제소되는 예가 늘어나자 미국 교정전문의 사이에서 발치기피현상이 생겼다고 한다⁹⁾.

심포지엄 SⅢ-12

손 명 세/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치료 및 재건 교정치료와 관련한 의료사고와 예방을 위한 법적 분석

3. 교정의료사고의 예방방안

I. 교정의료계약의 성질

일반적인 의료계약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다해야 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대법원(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의 입장이다. 그러나 의치의 완성이나 미용수술을 위한 계약은 일의 완성, 즉 일정한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교정은 치료성과 미용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교정계약의 법적 성질을 일의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도급계약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교정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하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근거가 약하고 사인 사이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의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성이 높은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II. 예방방안

이러한 교정의료에 의한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시술함으로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조각하는 방법이다. 둘째, 학회차원에서 교정 임상의료지침 등을 제정하여 자율규제를 통한 교정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켜 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이다.

III. 설명의무

1. 설명의무 일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9) 歯科被害者連絡協議會編, 전계서 129頁

관한 것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 진단명,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를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정의료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교정의료의 경우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수술이 종료되는 일반적인 외과수술이나 신경외과수술 등에서 사용되는 수술동의서와 같은 문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정의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1) 최초 진료시 설명의무

먼저, 환자를 진단한 결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교정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진단명과 치아의 현재 위치, 교정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와 받을 경우의 예후 또는 교정 후 예상되는 치아의 형태 등과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교정의료의 시술방법이나 예상되는 비용, 소요되는 시간, 시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에 남겨 두어야 한다.

(2) 치료의 과정 중 설명의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교정치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이를 의무기록에 남겼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치아 상태는 시술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고 초기설명과 다른 결과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예측가능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예: 3개월정도 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도 의무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

(3) 치료종료 후 설명의무

또한 교정치료가 종료한 경우에도 어떠한 후유증의 발현이 의학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상의 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와 같은 증상이 자각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수진할 것과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의무기록에 그러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어야 한다.

IV. 교정의료의 질 평가(Quality Control)

1. 전문의 제도의 도입

교정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교정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율규제의 도입이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교정의사의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과 교육과 개업의가 개인적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나, 이를 치과의사협회나 교정학회가 중심이 되어 필요로 하는 교육의 정도나 방법,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진 일정한 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하여 교정의료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율규제의 도입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임상의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만들 어내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평가의 기초로 삼는 것은 효율적·가치 중립적인 자율규

제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2. 교정치료 후의 평가

교정치료가 종료된 후의 환자의 치아 상태나 시술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정치료의 적정성이나 치아의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보다는 전문가집단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하여 의사에 대한 환자의 믿음은 무척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료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데 참고하여야 한다. 최근 의료 사고나 의료 분쟁의 증가 원인 중 하나를 환자와 의사사이의 신뢰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제시한다.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임상에 반영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물론 모든 환자의 독특한 취향이나 개성 등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환자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의 반영은 꼭 필요 한 일이라 생각된다.